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공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등록제

2013.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지역: 전국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제외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5천원)
- ③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음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가기로, 동물용 의료가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15년전부터 마이크로칩 이식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마이크로칩으로 인해 동물체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암 등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동물인식표 부착(법 제13조)

- ① 소유자 성명
- ② 소유자의 전화번호
- ③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

인식표 미부착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www.
animal.go.kr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반려동물 분실신고



유기동물 입양안내



동물등록 확인



유기동물 주인찾기



전국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동물보호 상담전화

1577-095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www.qia.go.kr